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0139

www.billyangel.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08-22

billyangel@daum.net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9

빌리엔젤 정보공개서

(주)그레닉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그레닉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전화번호 : 02-512-6257

팩스번호 : 070-8220-6255

담당부서 : 02-542-6257(내선 22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그레닉스	빌리엔젤 외1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6.13.	2012.06.12.	곽계민	02-512-6257	070-8220-6255
	법인등록번호	110111-4890483	사업자등록번호	120-87-843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곽계민	빌리엔젤 외1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곽계민	02-512-6257	070-8220-625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신종삼	빌리엔젤 외1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곽계민	02-512-6257	070-8220-625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호영성	빌리엔젤 외1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곽계민	02-512-6257	070-8220-62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빌리엔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빌리엔젤	-
상 호	빌리엔젤 ○○점	-
상표(서비스표)	빌리엔젤 Billy Angel	등록번호: 4015122720000
광 고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9,627,782	16,079,925	3,547,857	20,675,514	-1,604,454	-2,500,455
2023년	15,701,743	16,342,002	-640,259	17,308,787	-3,103,086	-4,188,116
2024년	15,272,870	15,903,027	-630,156	14,323,291	-1,687,044	-2,489,823

※ 별첨4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곽계민	대표이사	2021.03.31 ~ 현재	(주)그레닉스 대표이사	회사경영 총괄
			2019.07 ~ 2021.03.30	(주)그레닉스 사외이사	기획 및 영업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신종삼	기타비상무 이사	2023.01 ~ 현재	(주)그레닉스 기타비상무이사	-
	호영성	기타비상무 이사	2021.03 ~ 현재	(주)그레닉스 기타비상무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2	18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가맹사업경 영	2020.01 ~ 현재	평화다방(등록번호:20200022)이 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가맹사업경 영	2024.04 자진 등록취소	호놀룰루피자(등록번호:20201584) 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가맹사업경 영	2024.04 자진 등록취소	치킨파이버(등록번호:20210053)이 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가맹사업경 영	2024.04 자진 등록취소	워크스테이션(등록번호:20210054) 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가맹사업경 영	2024.04 자진 등록취소	메이메이식당(등록번호:20210028) 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 리 내 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빌리엔젤 Billy Angel	영업표지사용, 가맹점사용	출원일: 2018.11.26. 등록일: 2019.08.20.	출원번호: 4020180164771 등록번호: 4015122720000	(주)그레닉 스	2029.08.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빌리엔젤’ 가맹사업 현황

1. ‘빌리엔젤’을 시작한 날 : 2012년 6월 25일

2. ‘빌리엔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그레닉스	빌리엔젤	김종헌	2012.06. ~ 2021.03.30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주)그레닉스	빌리엔젤	곽계민	2021.03.31 ~ 현재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3, 4층(당정동, 두림빌딩)

3. ‘빌리엔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빌리엔젤	커피	커피, 케이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빌리엔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48	30	18	35	22	13	26	18	8
서울	28	14	14	21	12	9	16	10	6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2	2	0	1	1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8	14	4	13	9	4	10	8	2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빌리엔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37	1	7	1	8	30
2023	30	0	0	8	0	22
2024	22	0	4	0	0	18

6. ‘빌리엔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그레닉스	평화다방	20200022	커피	1/2	0/2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빌리엔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8	249,624	8,503	1,165,840	58,292	38,896	734	
서울	10	229,810	8,196	625,689	22,574	117,255	2,697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8	274,392	8,851	1,165,840	58,292	38,896	734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이며 오픈 당일 매출을 제외한 월 평균 매출입니다.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8개	2,53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104,768		(비공개)	
판촉	-		0	0	0	
합계	-	-	104,768		(비공개)	

※ 빌리언젤에 대한 금액은 위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계약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개인상품부	-	02-2073-5412
기업은행	SOHO센터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66-2566(내선 0->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계약 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예치계약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그레닉스(舊 (주)빌리엔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계약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빌리엔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00	계약 체결 즉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및 영업개시 전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10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가입비	3,000				
교육비	3,000				
경영지원비	2,000				
개설지원비	1,000				
자료제공비	1,0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 급 기 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5,000	계약 체결 즉시	물품공급 잔존 채무액 및 정산 후 반환	부가세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5,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금 액
합 계	15,000
가 맹 비	10,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66㎡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 급 기 한	반 환 조 건	비 고
총 계	-	199,100~221,100	9,955~11,055	공사시공 전 100% 지급	발주 전 계약취소	66㎡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2,500천원 추가부담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외 협력업체(미지정)	55,000	2,750			
간판 및 싸인		11,000	550			

조경 및 실내조형물		11,000	550		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협력업체 외 협력업체(미지 정)	61,600~72,600	3,080~3,630		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용품 및 비품		5,500	275		상품 미공급시	
집기류 및 의·탁자		55,000~66,000	2,750~3,300		상품 미공급시	냉·난방기 별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공사(철거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냉/난방공사, 외부공사 등)와 각종인허가 비용은 별도입니다.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자체 시공 시 가맹본부에 3.3㎡당 350천원(부가세 미포함)의 감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 정 주 체	선 정 기 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512-625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 육 기 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빌리엔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로열티)	가맹본부	식자재 매입액의 5.5%	매월 5일	-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3,3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추가 교육 필요 시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홈페이지 사용료	가맹본부	4.3	매월 말일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위생관리	매장 및 직원 위생상태, 한글표기사항, 소분일자, 유통기한 등 확인	매월 1회	문의: 사업운영부 (02-512-6257)
운영매뉴얼관리	서비스 및 레시피 등 운영매뉴얼 준수여부 확인	1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납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빌리엔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 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잔여 계약 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될 경우 당사가 제공한 중요한 서류 및 제반 자료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종료 즉시 가맹점 내·외부의 상호, 서비스표, 서비스마크등 전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7일 이내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사용 중인 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를 중단 및 해지 후 당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교부 받습니다.

당사는 가맹비 반환 조건에 의하여 가맹비의 일부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상호 등의 사용중단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 반환합니다.

귀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귀하가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m^2 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1일 3,0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점포 면적 m^2 X 지체일수 X 3,000원)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후 당사의 영업표지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만의 특유한 메뉴(메뉴명, 메뉴세팅, 메뉴조리법등)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빌리엔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필요설비, 필요장비 외에 상품, 원재료 등의 품목은 가맹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하였으니 가맹계약서상의 거래 품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필수품목(원부재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계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계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계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음료류	카푸치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 계약해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ICE)		
	카페라떼	카페라떼(ICE)		
	카페모카	카페모카(ICE)		
	카라멜마끼야또	카라멜마끼야또(ICE)		
	바닐라라떼	바닐라라떼(ICE)		
	그린티라떼	그린티라떼(ICE)		
	다크초콜릿라떼	다크초콜릿라떼(ICE)		
	로얄밀크티	로얄밀크티(ICE)		
	캐모마일	캐모마일(ICE)		
	루이보스바닐라	루이보스바닐라(ICE)		
	썸머베리	썸머베리(ICE)		
	얼그레이	얼그레이(ICE)		
	페퍼민트	페퍼민트(ICE)		
	잉글리쉬실론	잉글리쉬실론(ICE)		
	애플	애플(ICE)		
	레몬티	레몬티(ICE)		
	자몽티	자몽티(ICE)		
	유자티	유자티(ICE)		
	플레인요거트스무디	바닐라스무디		
딸기요거트스무디	그린티스무디			
애플민트모히토	유자스무디			

	슬러시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유자에이드	애플민트모히또			
	딸기우유	밀크티우유			
케익류	당근	레드벨벳			
	밀크크레이프	레인보우크레이프			
	티라미슈	쇼콜라봉봉			
	자몽	몽블랑			
	핑크베리	데블스초콜릿			
	체리치즈	커피크레이프			
	우주	눈꽃크레이프			
쿠키류	아몬드	무화과			
	레드벨벳	파인애플			
	플레인	피넛			
	초코	인절미			
	마카다미아	화이트 초코 피칸			
	오트밀&건포도				
빙과류	당고팥빙수	초코마카롱빙수			
	딸기바나나우유빙수				
마카롱	라즈베리	레드벨벳			
	요거트	레몬			
	오레오	초코			
	얼그레이	블루베리			
	솔티카라멜	우유바닐라			
	치즈	멜론			
기타	원두	머그컵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

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제3자	원재료 및 공산품 일체	가맹본부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 계약해지	기타법률 사항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품·용 역명	권장 가격	구분	상품·용 역명	권장 가격	가 격 통 보 방 법	비고
COFFEE	카푸치노	5,800	TEA MilkTea	얼그레이	5,100	공문 공지	
	아메리카노	4,600		캐모마일	5,100	공문 공지	
BUBBLE TEA	아메리카노 (ICE)	4,600		루이보스 바닐라	5,100	공문 공지	

	카페라떼	5,100	FRUIT TEA	패셔너트	5,100	공문 공지	
	카페라떼(ICE)	5,100		잉글리쉬 실론	5,100	공문 공지	
	카페모카	5,600		애플	5,100	공문 공지	
	카페모카(ICE)	5,600		썸머베리	5,100	공문 공지	
	바닐라라떼	5,600		로얄 밀크티	5,800	공문 공지	
	바닐라라떼(ICE)	5,600		로얄 밀크티(ICE)	5,800	공문 공지	
	카라멜마끼 야또	5,600		레몬	5,300	공문 공지	
	카라멜마끼 야또(ICE)	5,600		레몬(ICE)	5,300	공문 공지	
	흑당버블티 홍차버블티	5,800 5,800		MilkTea	자몽	5,300	공문 공지
			자몽(ICE)		5,300	공문 공지	
			유자		5,300	공문 공지	
SPECIAL LATTE	그린티 라떼	5,600	FRUIT TEA	유자(ICE)	5,300	공문 공지	
	그린티 라떼(ICE)	5,600		청귤티	5,300	공문 공지	
	다크초콜릿 라떼	5,600		청귤티(ICE)	5,300	공문 공지	
	다크초콜릿 라떼(ICE)	5,600		자몽블랙 티	5,300	공문 공지	
BOTTLE MILK	딸기우유	4,500	시즌음료	자몽블랙티 (ICE)	5,300	공문 공지	
	로얄 밀크티	4,500		레드샹그 리아	7,200	공문 공지	
				화이트뱅크	7,200	공문 공지	
ADE SMOOTH	레몬에이드	5,800	CAKE	레드벨벳 1호	43,000	공문 공지	
	자몽에이드	5,800		레드벨벳 2호	55,000	공문 공지	
	유자에이드	5,800		레드벨벳 조각	7,700	공문 공지	
	애플민트모 히또	6,300		당근 1호	39,000	공문 공지	

	플레인요거트스무디	6,200	CAKE	당근 2호	51,000	공문 공지	
	딸기요거트스무디	6,200		당근 조각	7,200	공문 공지	
	바닐라스무디	6,200		밀크크레이프 1호	35,000	공문 공지	
	그린티스무디	6,200		밀크크레이프 2호	46,000	공문 공지	

	유자스무디	6,200	CAKE	밀크크레이프 조각	6,500	공문 공지	
	애플민트모히또슬러시	6,100		레인보우크레이프 조각	8,000	공문 공지	
MACARON	라즈베리	2,800		우주케이크 1호	41,000	공문 공지	
	요거트	2,800		우주케이크 2호	53,000	공문 공지	
	초코	2,800		우주케이크 조각	7,400	공문 공지	
	레몬	2,800		쇼콜라봉 1호	47,000	공문 공지	
	블루베리	2,800		쇼콜라봉 2호	61,000	공문 공지	
	얼그레이	2,800		티라미수크레이프 1호	36,000	공문 공지	
	솔티카라멜	2,800		티라미수크레이프 2호	49,000	공문 공지	
	우유바닐라	2,800		티라미수크레이프 조각	7,000	공문 공지	
	오레오	2,800		우주케이크 1호	41,000	공문 공지	
				우주케이크 2호	53,000	공문 공지	
	치즈	2,800		우주케이크 조각	7,400	공문 공지	
				딸기크레이프 1호	36,000	공문 공지	
	멜론	2,800		딸기크레이프 조각	6,800	공문 공지	
				체리치즈케이크 1호	42,000	공문 공지	
체리치즈케이크 2호				53,000	공문 공지		
체리치즈케이크				7,700	공문 공지		

				조각			
				자몽케이크 1호	39,000	공문 공지	
				자몽케이크 2호	51,000	공문 공지	
				자몽케이크 조각	7,200	공문 공지	
				핑크베리 케이크 1호	43,000	공문 공지	
				핑크베리 케이크 2호	55,000	공문 공지	
				핑크베리 케이크 조각	7,700	공문 공지	
				커피크레이프 1호	35,000	공문 공지	
				커피크레이프 2호	48,000	공문 공지	
				커피크레이프 조각	6,800	공문 공지	
				데블스 초콜릿 2호	64,000	공문 공지	
				데블스 초콜릿 조각	9,500	공문 공지	
				몽블랑 1호	52,000	공문 공지	
				몽블랑 2호	72,000	공문 공지	
				몽블랑 조각	12,100	공문 공지	
				눈꽃코코넛 크레이프 2호	51,000	공문 공지	
				눈꽃코코넛 크레이프 조각	7,500	공문 공지	
				밀크크레이프 조각	6,500	공문 공지	
				레인보우 크레이프 조각	8,000	공문 공지	
				우주케이크 1호	41,000	공문 공지	
				우주케이크 2호	53,000	공문 공지	
				우주케이크 조각	7,400	공문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디저트카페	빌리엔젤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5천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설정기준에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빌리엔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ssg.com	http://www.ssg.com	케이크류 , 마카롱류	오픈마켓
	쿠팡	https://www.coupang.com		오픈마켓
	자사몰	https://www.billyangelshop.com		인터넷쇼핑몰
	29cm	https://www.29cm.co.kr		인터넷쇼핑몰
	10x10	http://m.10x10.co.kr		인터넷쇼핑몰
	카카오톡	https://www.kakaocorp.com/service/KakaoTalkGift		카카오톡선물하기
	기타 일반 소매 쇼핑몰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0.6%	31.5%	1.3%	36.6%

* 자사 온라인몰 매출액과 기타온라인 매출액은 추정치이므로 매출액 비중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상품이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므로 가맹점에서만 판매되는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빌리엔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4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4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제4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4항
○ ‘빌리엔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4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제4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는 가맹점 운영 및 영업 상태에 대하여 당사의 기준(가맹점 경영, 마케팅,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 조리, 위생, 식자재 관리 등)에 의거 수시로(2개월에 1회 이상) 점검 및 교육·지도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5조 제1항
○ 당사는 가맹점 운영 및 영업상태의 점검 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즉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5조 제1항
○ 법정상속인이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할 경우에는 당사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의 점포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제35조 제1항
○ 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반드시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하가 지역 특성상 또는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조정을 필요로 할 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제35조 제1항
○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음식 맛을 유지하여 매출 및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품 매뉴얼과 식재료를 공급하며, 수시로 교육·지도한다. 동시에 귀하는 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당사의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35조 제1항
○ 귀하는 포장 및 배달 시 당사 관리 정책에 의거 통일된 포장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그 자재는 당사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박스, 포장봉투 및 기타 용기를 기본으로 하고, 귀하는 이를 임의로 제작할 수 없다.	제35조 제1항
○ 귀하가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당사가 맛의 표준화 및 정통성 유지와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재료 구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하여 당사가 정보필요에 의거 매출 공개 요청 시 귀하가 허위로 통지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제35조 제1항
○ 당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행위	제35조 제1항
○ 귀하의 채무액이 계약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의 가맹점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인근 타 가맹점과의 마찰로 인해 당사의 보상금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동종의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자재 등 제반 물품을 인수 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제35조 제1항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60일전)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승인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규가맹계약 작성)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가맹점 운영 인수인계(5일)	문의: 사업운영부 (02-512-6257)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잔여 계약 기간을 인정하고 가맹비 중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관계가 직계1촌일 경우 가맹비는 면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과 소정의 교육비만을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 전 범 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교육과정 이수 후 대리운영 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과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 전까지 사용하였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와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베이커리 카페형태로 메뉴명, 메뉴세팅, 메뉴조리법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 판매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사업운영부 (02-512-6257)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빌리엔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시 간	영 업 일 수	비 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롭게 조정 가능	연 중 무 휴	문의:사업운영부 (02-512-625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첨**의 휴점 신청서를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 독 절 차	빈도 및 시기	담 당 팀	비 고
1. 법적사항 2. 식자재 관리 3. 위생관리 4. 운영표준화 5. 영업상태 6. 메뉴조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점 종합 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정기평가 (4회/1년) 수시평가 (1회 이상/1개월)	본사 SV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빌리엔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 담 절 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부담액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담	월간 가맹점의 본사 식자재 총매입액의 1.5%를 산정 (10만원 이하이면 10만원[하한선], 30만원 이상이면 30만원[상한선])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 가맹점 부담액 등 세부사항 사후 공지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행사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부담비율 공지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 가맹점 부담액 등 판촉계획 사전 공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사업자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20조 3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m^2 당 1일 1,000원씩을 산출한 금액을 계약에 대한 위약금(점포면적 X 지체일수 X 1,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31조 3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어길 시에는 m^2 로 산출(점포면적 X 1,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14p~15p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계약 14일 전)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바구니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지 영업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 원 정 책	주 요 내 용	지 원 조 건	지 원 기 간	지 원 금 액	비 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	-
반품지원	시즌행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출시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시즌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가맹점 매입금액의 5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견적금에서 차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및 가맹점	문의: 사업운영부 (02-512-6257)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문의: 사업운영부 (02-512-6257)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빌리엔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하나은행	최대 3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00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512-6257(내선212)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빌리엔젤’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사용 방법 등	교육장 및 매장 실습교육	개점 전 15일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판매 종업원 관리 실무 운영표준화 교육	실습교육	운영점검 후 필요시 (사전협의)	필수 교육 (신 메뉴)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 요청이 있을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빌리엔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최 소 시 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4일	3,0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협 의	협 의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 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한 교육일정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을 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므로 1회 이상 교육의 일정연기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역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길 48 강남ELS빌딩 1층
2	서울	대학로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24 스타리움 빌딩
3	서울	삼성코엑스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1층 센트럴플라자 B003
4	서울	광화문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층
5	서울	여의도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층 1호
6	서울	빌리엔젤 당산역점	서울영등포구 당산로 223 1,2층
7	경기	수내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33
8	경기	롯데백화점 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61 (인창동 677) 롯데백화점 구리점 8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77,917	※ POS상 매출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02-512-62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첨4] 가맹본부 재무 증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